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. 12. 15.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- 제출 및 회부일자
 -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24일
 -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26일

- 상정일자 :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 - 2009. 12. 2 :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발전국장 박 범 수)

- 제안 이유
 -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·자문기능을 가진
“지역혁신협의회”가 폐지되고

- ※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(‘09. 10. 9)
- 동일 기능의 “지역발전협의회”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
규정에 의거 신설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
법률 용어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 내용

- 지역균형발전시책 심의·자문 기관(제4조 제4항) 및 충청북도
균형발전 위원회 대행 기관(제14조 제1항) **명칭 변경**
(지역혁신협의회 ⇒ 지역발전협의회)
- 알기쉬운 법률용어(어문규정 준수, 용어 순화, 한글화)를 위한
일부 조문 개정
(정의는 ⇒ 뜻은, 이라 함은 ⇒ 이란, 의한 ⇒ 따른 등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운영 해)

-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
의회로 명칭변경 및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
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의결

7. 소수이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를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“이라 함은”을 각각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“제3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“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4조 1항에 의한”을 “제4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.

제14조(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)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되, 충청북도지역발전 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지역균형발전”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“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”이라 함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>3. “낙후지역”이라 함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지역균형발전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“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”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>3. “낙후지역”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.</p>
<p>제4조(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 ~ 4 (생략)</p> <p>③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</p> <p>④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관련 시장·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</p>	<p>제4조(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 ~ 4 (생략)</p> <p>③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</p> <p>④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관련 시장·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시행계획 수립) 도지사는 <u>제4조 1항에 의한</u>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시행계획 수립) 도지사는 <u>제4조 제1항에 따른</u>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
<p>제14조(위원회 설치) ① <u>지역균형발전 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 이 위원회는 「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설치된 “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”로 대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4조(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) <u>지역균형발전 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되, 충청북도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</u></p>

관련법령 발취

○ 국가균형발전특별법

개정 전	개정 후('09.4.22)
<p>제28조(시·도 지역혁신협회의 설치 등) ①시·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지역혁신협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도협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시·도협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	<p>제29조(시·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) ①시·도지사는 시·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시·도 발전협회를 둘 수 있다.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을 위하여 시·군·구 발전협회를 둘 수 있다.</p>

○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폐지조례안(조례 제3218호, 2009. 10. 9)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○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(훈령 제1292호, 2009. 10.13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발전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연구·자문, 협의·조정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
2.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관련 사항
3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특성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
4.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
5.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관련 사항
6. 지역발전 주체간 연계·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협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부의하는 사항